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 제정 알림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소수 긴급수급 조정조치」(환경부 고시)가 2021년 11월 11일 제정되었습니다.
2. 수송용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체에서는 생산(수입)량, 판매(출고)량 등을 매일 낮 12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021.11.11. ~ 2021.12.31.
 - 신고대상 : 수송용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 신고의무 : 요소수 생산자·수입자·판매자에게 생산(수입)량, 사용량, 판매(출고)량 등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신고방법 : 붙임 1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등 신고 안내서 참조(수송용 요소수 신고방법 등은 별도 공지사항 참고)
3. 아울러, 각 시도(시군구), 유역(지방)환경청 및 관련 협회에서는 요소관련 업체가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등 신고 안내 1부.
2.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1부.
3. (별첨1)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현황 등 신고서 서식 1부.
4. (별첨2)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량, 수입량, 판매량 등 신고서 상세 내역 작성 서식 1부. 끝.

환경부 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환경정책과), 부산광역시(환경정책과), 대구광역시(기후대기과), 인천광역시(대기보전과), 광주광역시(기후환경정책과), 대전광역시(미세먼지대응과), 울산광역시(환경보전과), 세종특별자치시(환경정책과), 경기도지사(환경안전관리과), 강원도지사(환경과), 충청북도지사(기후대기과), 충청남도지사(환경안전관리과), 전라북도지사(자연생태과),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환경관리과), 경상북도지사(환경안전과), 경상남도지사(기후대기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 요소 생산(수입, 판매)업체 대표이사 귀하, 관련 협회장 귀하, 수도권대기환경청장(자동차관리과), 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 금강유역환경청장(대기환경관리단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대기환경관리단장), 대구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 영산강유역환경청장(대기환경관리단장), 전북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

지방환경사무관 **장성호** 수석전문관 **임충묵** 과장 **차은철** 전결 2021. 11. 11.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2550 (2021. 11. 11.)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05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6903 팩스번호 044-201-6915 / mono92@me.go.kr / 대국민 공개